

유 기 약 관

(적용범위)

- 제1조 폐사가 고객(폐사와의 사이에 유기계약 또는 이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 및 폐사와의 사이에 유기계약 또는 이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동일.)과의 사이에 체결하는 유기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에 정하는 바에 의한 것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1. 폐사와 고객과의 사이에서 법령 및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반(反)하지 않는 범위 에서 특약이 성립 된 때에는 전항(前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고객이 폐사의 매장에 내점(來店)한 시점에서, 본 약관 및 특약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기계약의 성립등)

- 제2조
1. 유기계약(遊技契約)이란, 폐사가 고객에게 폐사의 매장내에 있는 특정의 유기기(遊技機)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고객이 해당 유기기를 사용하여 유기(遊技)를 행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유기계약은 고객이 유기계약의 신칭을 하고, 폐사가 이것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 는 것으로 합니다.
 3. 고객은 전항(前項)의 신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정의 유기기를 지정하는 것으로 하며, 유기계약은 해당 지정된 유기기를 사용하는 유기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으로 합 니다.
 4. 고객이 유기기의 사용에 필요한 구슬 또는 메달(양자를 합쳐서 이하 「유기구(遊技球)」라고 한다.)의 제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를 했을 때는 제2항의 신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5. 폐사가 고객의 전항(前項)의 행위에 응하여, 유기구를 제공했을 때는 제2항의 승낙 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고객이 종전의 유기계약에 근거하는 유기기의 결과 취득한 유기구의 수에 응하는 상품 의 제공을 받지 않고, 폐사 또는 제삼자에게 유기구의 관리를 위탁(고객이 보관하여 관리를 위탁 받은 유기구를 이하 「보관구슬(貯玉)」이라고 한다.)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특정의 유기기를 지정한 다음 보관구슬의 반환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를 했을 때는 제2항의 신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폐사가 보관구슬을 반환했을 때 에 동항(同項)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고객이 폐사로부터 유기구의 제공을 받지 않고, 또는 보관구슬의 반환을 받지 않고, 지인 등 제삼자와 유기구를 공동(共同)으로 사용하여 유기하는 경우에는 유기구를 특 정 유기기의 유기구 받침통(受皿)에 투입했을 때에 제2 항의 신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폐사가 유기를 개시시켰을 때에 동항(同項)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 합니다.

(유기계약의 체결거부)

- 제3조 폐사는 전조(前條)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유의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는 유기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유기계약의 신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는 경우
 - (2) 고객이 지정하는 유기기에 있어서 폐사가 이미 제삼자와 유기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 (3) 고객이 이 약관에 반(反)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체감기, 슬레노이드, 전파 발생기, 저주파 치료기, 유기기의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유기기를 오작동시키는 기기, 그 외 통상 유기에 사용하지 않는 기구 (이하 「체감기 등 기구(體感器等器具)」라고 한다.)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5) 고객이 유기에 관련하여 법령 혹은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위반하고, 또는 공공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에 반(反)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고객이 감염증(感染症)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소정의 감염증의 환자임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우
 - (7) 고객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등의 방지에 관한 법률 소정의 폭력단원 임이 인정되는 경우
 - (8) 천재지변 또는 유기기 혹은 유기기 주변설비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 해 고객이 유기를 할 수 없는 경우
 - (9)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그 외의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 (10) 고객이 18세 미만인 경우
 - (11) 고객이 18세 미만의 자(者)를 동반하는 경우(탁아시설 등에 맡기는 경우를 제 외한다.)
 - (12) 고객이 자동차로 내점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동차내에 유아, 고령자 등의 제삼 자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이하 「유아 등」이라고 한다.)를 남겨 두는 경우
 - (13) 그 외 전각호(前各号)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유기계약의 변경)

- 제4조 폐사와 고객과의 사이에 유기계약이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 고객이 지정한 유기 기에 있어서의 유기의 결과 취득한 유기구를 사용하고, 다른 유기기로 유기를 개시 했을 때는 그 후, 유기계약은 해당 다른 유기기에 있어서 계속되며, 당초의 유기기에 있어서의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2. 폐사와 고객과의 사이에 유기계약이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 고객이 지정한 유기기로 다른 고객에게 유기를 시켰을 때는 그 후, 유기계약은 해당 다른 고객과의 사이에 계 속되며, 당초의 고객과의 사이의 유기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금지행위)

- 제5조 고객은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변칙치기
파칭코 유기기에 있어서 빈번히 구슬의 발사를 멈추는 행위, 회동식 유기기에 있어서 스톱 버튼을 정해진 순서 이외로 누르는 행위 등, 폐사가 변칙치기로 인정 하는 행위
 - (2) 부정행위
 - ① 기판, ROM, 그 외 유기기의 부품을 교환하는 행위, 하네스 등, 유기기에 새 로운 부품을 설치하는 행위, 전파 발생기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유기기의 프로 그램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유기기를 오작동시키는 행위, 설정 등 유기기의 상 태를 변경하는 행위, 그 외 폐사의 의사(意思)에 반(反)하여 유기기를 변경 하는 행위
 - ② ①에 내거는 행위에 의해서 생긴 상태를 이용하여 유기하는 행위, 기구 등을 이용하여 유기기내의 유기구를 배출시키는 행위, 그 외 폐사의 의사(意思)에 반 (反)하여 유기구를 취득하는 행위
 - (3) 체감기 등 기구의 반입 · 사용
체감기 등 기구의 반입 및 체감기 등 기구를 사용하여 유기하는 행위
 - (4) 동시 유기
복수(複數)의 유기기를 동시에 사용(유기기의 받침통(受皿)에 물건을 두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유기하는 행위
 - (5) 유기구의 매매
유기구를 제삼자와 매매하는 행위
 - (6) 유기기에 충격을 주는 행위
 - ①유기기를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또는 두드리는 등, 유기기에 충격을 주는 것에 의해 입상(入賞)을 재촉하는 행위
 - ②유기기를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또는 두드리는 등, 유기기에 충격을 주는 것에 의해 유기기를 파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 (7) 손 넣음 유기, 핸들의 고정유기
유기기의 핸들에 어스(접지)를 하는 등에 의해 손을 떼어 놓은 상태로 유기하는 행위, 또는 유기기의 핸들에 물건을 끼우는 등에 의해 유기기의 핸들을 고 정한 상태로 유기하는 행위
 - (8) 유기구의 반입, 반출
유기구를 매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또는 부정하게 반출된 해당 매장의 유기 구 혹은 다른 매장의 유기구를 매장 안으로 반입하는 행위
 - (9)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
폭력 행위, 다른 고객에게 지나친 간섭 등,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

(유기계약의 해지)

- 제6조 고객은 폐사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는 것에 의해 유기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폐사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기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고객이 이 약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2) 제3조 각호에 열거하는 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고객이 유기에 관련하여 폐사 또는 폐사 종업원의 지시에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 지 않는 경우
 - (4) 천재지변 또는 유기기 혹은 유기기 주변설비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당일의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전2항에 의해 유기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는 장래에 항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유기요금)

- 제7조 유기요금은 매장내에 표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상당액 을 포함합니다(소비세법 및 지방세법으로 정하는 면세 사업자를 제외한다.).

(유기시간 등)

- 제8조 영업시간은 오전 시 분부터 오후 시 분까지로 하며, 유기시간은 오전 시 분부터 오후 시 분까지로 합니다. 단, 이와 다른 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매장내에 있어서 안내방송, 게시, 그 외의 방법에 의해 고지합니다.
2. 전조(前條)에 정하는 유기시간의 종료시에 있어서 유기계약이 존속하고 있었을 경 우에는 유기시간의 종료에 수반하여 해당 유기계약도 종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품의 제공)

- 제9조 폐사는 고객에 대해 해당 고객이 유기계약에 근거하여 취득한 유기구 (제2조 제7항에 정하는 유기구의 공동 사용에 의해 제공을 받은 유기구를 포함한다.)의 수에 유기구의 종류에 상응한 유기요금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상품으로 제공합 니다. 단,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유기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또는 유기 종료 후에 고객이 이 약관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시설의 이용규칙 등)

- 제10조 주차장, 휴게소, 그 외의 시설의 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차장
 - ① 고객은 매장에 부설하는 주차장 및 자전거주차장(양자를 합쳐서 이하 「주차장 등」이라고 한다.)을 내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자동차, 자동차이륜차 또는 자전거 등(이것들을 합쳐서 이하 「자동차 등」이라고 한다.)을 주차 또는 자전거를 주차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기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및 유기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주차장 등으로부터 퇴거해야 합니다.
 - ② 고객이 유아 등을 동반하여 내점했을 경우에는 자동차내에 해당 유아 등을 남 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 ③ 주차장 등에 주차한 자동차 등 또는 자동차 등 안에 두었던 재물에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폐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폐사 또는 폐사 종업 원의 귀책사유에 근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2) 휴게소
고객은 매장내에 설치된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기계약이 체결 되지 않은 경우 또는 유기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는 즉시 휴게소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 (3) 물품보관함
 - ① 고객은 매장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기계약이 체 결되지 않은 경우 또는 유기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는 즉시 물품보관함을 비워 주어야 합니다.
 - ② 그 외 물품보관함의 이용에 관해서는 물품보관함의 이용 약관에 따릅니다
 - (4) 그 외 시설의 이용
전3호 외에 고객은 유기계약에 근거하는 유기에 필요한 범위에 있어서 폐사 가 고객의 이용을 위해서 제공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기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또는 유기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는 즉시 해당 시설의 이용 을 종료해야 합니다.

(폐사 및 고객의 책임)

- 제11조 폐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폐사는 손해배상의 책 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고객의 승낙이 있을 때는 폐사는 유기구 의 제공에 의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2.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유기기, 매장설비, 그 외의 물품의 파과 등, 폐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고객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3. 천재지변 등 폐사 또는 고객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유기기 일시적 으로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폐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유기 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도 동일합니다.

(물품의 도난에 대한 책임)

- 제12조 고객이 소지품을 분실 · 도난 되었을 경우에는 폐사는 해당 분실 · 도난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단, 폐사가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소지품에 관해 서는 예외로 합니다.

이 상

즐겁게 안심하고
유기(遊技)할 수
있는 PCSA회원을

PCSA(일반사단법인 파칭코·체인스토어 협회)가맹기업

제작·편집 : PCSA법률 고문 연구부회 2015.11.